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정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772

발의연월일: 2024. 8. 13.

발 의 자:이정문・이기헌・황명선

이학영 · 홍기원 · 서영석

문진석 · 임광현 · 문금주

이훈기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향후에 본인이 뇌사 상태에 처하거나 사망할 때 장기 등을 기증할 의사가 있는 경우 장기등 기증희망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선진국에 비하여 뇌사자 장기이식 희망률이 현저하게 낮아 장기등 기증희망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의 발급·갱 신 발급과 같은 계기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주민등록증을 발급·재발급·갱신 발급 하는 경우에 해당 발급·재발급 또는 갱신 발급 신청자 등에게 장기 등 기증희망등록신청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도록 하고 장기등기증희망 자 등록에 관한 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며, 그 결과를 국립장기이 식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등기 증희망등록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15조의2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조제3호 중 "제15조"를 "제15조 또는 제15조의2"로 한다. 제6조제2항제1호 중 "제15조"를 "제15조 또는 제15조의2"로 한다. 제3장제2절에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5조의2(주민등록증 발급·재발급 시 장기등기증희망등록신청 접수 등) ① 시장(특별시장·광역시장은 제외하고 특별자치도지사는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「주민등록법」 제24조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거나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는 경우 발급또는 재발급받는 사람에 대하여 장기등기증희망등록신청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.
 - 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주민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는 사람이 제1항에 따라 장기등기증희망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본인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을 접수하고, 접수 결과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.
 - ③ 제2항에 따라 신청 접수 결과를 통보받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등록을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.

- ④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한 사람이 장기 등기증희망등록에 관한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즉시 그 등록을 말소 하여야 한다.
- ⑤ 제1항에 따른 의사 확인, 제2항에 따른 접수 및 통보, 제3항에 따른 신청인에 대한 통지의 절차·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7조제3항제2호 후단 중 "제15조의 장기등기증희망자"를 "장기등기 증희망자"로 한다.

제40조 중 "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"을 "구청장" 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4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4조(정의)		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		
1.・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		
3. "장기등기증희망자"란 본인	3		
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			
때(말초혈 또는 골수의 경우			
에는 살아있을 때를 포함한	<u>제15</u>		
다) 장기등을 기증하겠다는	<u>조 또는 제15조의2</u>		
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<u>제</u>	<u>.</u>		
<u>15조</u> 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			
말한다.			
4. ~ 6. (생 략)	4. ~ 6. (현행과 같음)		
제6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	제6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		
의무) ① (생 략)	의무) ① (현행과 같음)		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	②		
등의 기증ㆍ이식을 활성화하기			
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			
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.			
1. 운전면허증 등 국가와 지방	1		
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			
에 장기등기증희망자임을 표			
시(<u>제15조</u> 에 따라 장기등기증	<u>제15조 또는 제15조의2</u>		
희망자로 등록한 사람 중 원			

하는 사람에 한정한다)

2. ~ 5. (생 략) <신 설> -----

2. ~ 5. (현행과 같음)

제15조의2(주민등록증 발급·재 발급 시 장기등기증희망등록신 청 접수 등) ① 시장(특별시장 ·광역시장은 제외하고 특별자 치도지사는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·군수·구청장(자 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「주민등록법」 제24 조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 하거나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는 경우 발급 또는 재발급받는 사람에 대하여 장기등기증희망등록신 청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.
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주민 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 는 사람이 제1항에 따라 장기 등기증희망등록신청을 하는 경 우에는 본인 동의 여부를 확인 한 후 신청을 접수하고, 접수 결과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.

- 제17조(뇌사추정자의 신고 및 뇌 사판정의 신청) ①·② (생 략)
 - ③ 제2항에 따라 뇌사판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
 - 1. (생략)
 - 2. 뇌사추정자의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진

- ③ 제2항에 따라 신청 접수 결과를 통보받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등록을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.
- ④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한 사람이 장기등기증희망등록에 관한의사표시를 철회하면 즉시 그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.
- ⑤ 제1항에 따른 의사 확인, 제 2항에 따른 접수 및 통보, 제3 항에 따른 신청인에 대한 통지 의 절차・방법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.
- 제17조(뇌사추정자의 신고 및 뇌 사판정의 신청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 - 1. (현행과 같음)
 - 2. -----

료담당의사. 이 경우 뇌사추 정자가 <u>제15조의 장기등기증</u> 희망자인 경우로 한정한다.

④ (생 략)

제40조(권한의 위임)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<u>구청장(자치구의</u>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<u>장기등기증희망자</u>
④ (현행과 같음)
제40조(권한의 위임)
<u> 구청장</u>